

부산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4가단3434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31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.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1. 24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위 제1.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2. 1. 24. 접수 제9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1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